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발　주　기　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제조사·공급사 : 시스코 · ㈜ 아이티로그인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초금액(**₩19,862,000원** / VAT포함)에 낙찰률을 반영(곱셈)한 금액 이하로 하되, "제조사·공급사"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 년 10 월 13 일

발주기관 명　　**함　안　군　수**　　(인)

제조사 · 공급사 명　　**시스코 · ㈜ 아이티로그인**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발　주　기　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제조사·공급사 : ㈜ 코어엣지네트웍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초금액(**₩11,816,000원** / VAT포함)에 낙찰률을 반영(곱셈)한 금액 이하로 하되, "제조사·공급사"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 년 10 월 13 일

발주기관 명　　함　안　군　수　　(인)

제조사 · 공급사 명　　㈜ 코어엣지네트웍스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발　주　기　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제조사 . 공급사 : Xirrus · 빅썬시스템즈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초금액(**₩5,144,000원 /** VAT포함)에 낙찰률을 반영(곱셈)한 금액 이하로 하되, "제조사·공급사"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 년 10 월 13 일

발주기관 명　　**함　안　군　수**　　(인)

제조사 · 공급사 명　　Xirrus · 빅썬시스템즈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발　주　기　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제조사·공급사 : ㈜ 퓨쳐시스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초금액(₩11,680,000원 / VAT포함)에 낙찰률을 반영(곱셈)한 금액 이하로 하되, "제조사·공급사"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 년 10 월 13 일

발주기관 명　　함 안 군 수　　(인)

제조사 · 공급사 명　　㈜ 퓨 쳐 시 스 템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발주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제조사·공급사 : 대신네트웍스 주식회사(삼성전자 엔터프라이즈 PBX 파트너사)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초금액(**₩26,148,000원** / VAT포함)에 낙찰률을 반영(곱셈)한 금액 이하로 하되, "제조사·공급사"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 년 12 월 13 일

발주기관 명 함 안 군 수 (인)

제조사 · 공급사 명 대신네트웍스(주) 대표이사 김 영 식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발 주 기 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제조사·공급사 : ㈜ 키컴
○ 기술지원 제품명 : 전자팩스시스템(SMARTWorks V4.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초금액(₩5,351,000원 / VAT포함)에 낙찰률을 반영(곱셈)한 금액 이하로 하되, "제조사·공급사"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 년 10 월 13 일

발주기관 명 함 안 군 수 (인)

제조사 · 공급사 명 ㈜ 키 컴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발주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제조사·공급사 : ㈜ 라이노정보기술
○ 기술지원 제품명 : HP DL20 Gen10, AXGATE 40D, RC124-P2, APPM 1000 1식, Smart NAC V5.1.5 2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초금액(₩7,985,000원 / VAT 포함)에 낙찰률을 반영(곱셈)한 금액 이하로 하되, "제조사·공급사"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 년 10 월 13 일

발주기관 명 함 안 군 수 (인)

제조사 · 공급사 명 ㈜ 라이노정보기술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발주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제조사·공급사 : ㈜ 윈스테크넷
○ 기술지원 제품명 : SNIPER AF V2.0 2000, SNIPER NEFW 3510, SNIPER NEFW 3330 2대, SNIPER ONE-d 2200, SNIPER TMS Plus 2000, SNIPER ONE-i 2300 2대, SNIPER ONE-i 200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초금액(**₩20,351,000원** / VAT포함)에 낙찰률을 반영(곱셈)한 금액 이하로 하되, "제조사·공급사"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 년 10 월 13 일

발주기관 명 함 안 군 수 (인)

제조사 · 공급사 명 ㈜ 윈 스 테 크 넷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발주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제조사·공급사 : ㈜ 수산아이앤티
○ 기술지원 제품명 : eWalker SWG V9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초금액(**₩9,988,000원** / VAT포함)에 낙찰률을 반영(곱셈)한 금액 이하로 하되, "제조사·공급사"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 년 10 월 13 일

발주기관 명 함 안 군 수 (인)

제조사 · 공급사 명 ㈜ 수 산 아 이 앤 티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발주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제조사·공급사 : ㈜ 이글루코퍼레이션
○ 기술지원 제품명 : SPIDER TM v5.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초금액(**₩2,436,000원** / VAT 포함)에 낙찰률을 반영(곱셈)한 금액 이하로 하되, "제조사·공급사"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 년 10 월 13 일

발주기관 명 함 안 군 수 (인)

제조사 · 공급사 명 ㈜ 이글루코퍼레이션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발주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제조사·공급사 : 시큐어레터(주)
○ 기술지원 제품명 : Anyclick AIR-ENT3 1대, Anyclick AIR AS-300 20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초금액(₩4,450,000원 / VAT 포함)에 낙찰률을 반영(곱셈)한 금액 이하로 하되, "제조사·공급사"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 년 10 월 13 일

발주기관 명 함 안 군 수 (인)

제조사 · 공급사 명 시 큐 어 레 터 (주)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발주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제조사.공급사 : ㈜ 한싹
○ 기술지원 제품명 : Securegate v3.5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초금액(₩3,445,000원 / VAT포함)에 낙찰률을 반영(곱셈)한 금액 이하로 하되, "제조사·공급사"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 년 10 월 13 일

발주기관 명 함 안 군 청 (인)

제조사 · 공급사 명 ㈜ 한 싹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발주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제조사·공급사 : ㈜ 지인소프트
○ 기술지원 제품명 : ComVoy 서버모듈, ComVoy 에이전트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초금액(₩3,232,000원 / VAT포함)에 낙찰률을 반영(곱셈)한 금액 이하로 하되, "제조사·공급사"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 년 10 월 13 일

발주기관 명	함 안 군 수	(인)
제조사 · 공급사 명	㈜ 지 인 소 프 트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발주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제조사·공급사 : 에이치에스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 기술지원 제품명 : VSP G350 24TB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초금액(**₩1,610,000원** / VAT포함)에 낙찰률을 반영(곱셈)한 금액 이하로 하되, "제조사·공급사"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 년 10 월 13 일

발주기관 명 함 안 군 수 (인)

제조사 · 공급사 명 에이치에스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인)